정관 변경대비표

1. 대상 집합투자기구

-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모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 변경사유

- 투자대상 추가(주식)
-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관련내용 구체화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구체화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외국투자자문회사 추가

□ 현행· 변경 대비표

구 분	현 행	변경(안)
제51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신 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생 략)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 10. (생 략) (신 설) (신 설)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2. 법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 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다만,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경우 상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6. ~ 11. (현행 제5호 내지 제10호와 같음)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 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 4 항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 1 항제 3 호 및 제 5 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제 3 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처분 의무는 소멸한다.
제 52 조(투자 한도)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신 설) 2. ~ 8. (생 략) 9. 제 2 호 내지 제 4 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회사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2. 주식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 9. (현행 제 2 호 내지 제 8 호와 같음) 10. 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회사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 53 조(자산 운용 및 투자 제한)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특별자산,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회사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특별자산,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회사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을 초과하여

	는 행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 54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52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3 호 및 제 4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자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52 조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52 조제 6 호 내지 제 9 호, 제 53 조제 2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52 조 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3 호 및 제 4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자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52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52 조제 7 호 내지 제 10 호, 제 53 조제 2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조항 신설)	제 56 조의 3(투자자문회사)
제 56 조의 3(투자자문회사)	(신 설) (신 설) (신 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외국의 전문투자자문기관(“이하 외국투자자문회사”라 한다)을 투자자문회사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외국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대상의 선정과 관련한 조언을 하는 업무 2. 회사재산을 위하여 투자정책을 권고하고 외국투자대상지역에 대한 투자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외국투자자문회사의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와 외국투자자문회사간에 합의된 기일과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 57 조(차입 및 보증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회사재산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회사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회사재산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회사순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9 조(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회사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회사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자투자회사의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회사의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부칙	(신 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년 10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2. 대상 집합투자기구

-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 한화 분기배당형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 변경사유

- 환매수수료 삭제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현행· 변경 대비표

구 분	현 행	변경(안)
제 22 조(환매 가격 및 환매 방법)	③판매회사(제 21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 21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한다.
제 23 조(환매 수수료)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신 설)	②2016 년 10 월 28 일까지 주주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③2016 년 10 월 31 일부터 주주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57 조(차입 및 보증의 제한)	②제 1 항에 따라 회사재산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회사 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 1 항에 따라 회사재산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회사 순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8 조(정관의 변경)	⑥주주가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2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르는 경우 또는 제 71 조제 2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주주가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르는 경우 또는 제 71 조제 2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9 조(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회사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회사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주주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부칙	(신 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년 10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